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년월일	2014. 11. .
발 의 자	안주찬 의원 외 10명

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안주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2014. 11.
발 의 자 안주찬, 강승수, 권기만
김근아, 김복자, 김태근
박세진, 손홍섭, 양진오
정하영, 허 복

1. 제안이유

○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,

○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정착지원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2조)

○ 지원 대상 및 범위 (안 제3조 ~ 제5조)

○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사항 (안 제6조 ~ 제1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22조

○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의 2

구미시 조례 제　　호

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
2. “북한이탈주민 가정”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·입양·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.

3 “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”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·추진할 수 있다.

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

2. 시민 인식개선 및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

3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단체 보조)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「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지역협의회 설치)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
2.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4. 시 업무관련 공무원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.

④ 시장은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등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 등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·조정
2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·관 협력방안 마련
3.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협의회 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)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,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, 회의개최, 임무 등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

제13조(수당 등)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엄수의무 등)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된 협의회 위원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.

관계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2. "보호대상자"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
3. "정착지원시설"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"보호금품"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.
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·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
2. 취업직종·근로형태·근속기간·임금수준·근로조건 등 취업현황
3. 주거현황
4.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
5.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2조의2(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

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·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